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. 5. 30 선고 2022가단136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

변 론 종 결 2023. 4. 18.

판 결 선 고 2023. 5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 위 적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7277㎡에 관하여 1994. 6. 8.자(또는 2003. 5. 11.자) 취득시효
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제1예비적 청구취지]

피고는 경주시 C 임야 7277㎡ 중 17분의 8지분에 관하여 D(E생)에게, 그 중 17분의 3지분에 관하여 F(G생)에게, 17분의 6지분에 관하여 H(I생)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제2예비적 청구취지]

피고는 경주시 C 임야 7277㎡ 중 17분의 8지분에 관하여 D(E생)에게, 그 중 17분의 3지분에 관하여 F(G생)에게, 17분의 6지분에 관하여 H(I생)에게 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3. 5. 11. 접수 제121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주위적 청구 관련

(1) 경주시 J 임야 17851㎡(이하 ‘이 사건 분할 전 토지’라고 한다)는 1970. 12. 16.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,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3.경 J 임야 8926㎡ 및 C 임야 727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로 분할되었다.

(2) 이 사건 토지는 1983. 5. 11.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. 2. 8.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(3) 원고는 1974. 6. 3.경 망 K으로부터 매수한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, 1974. 6. 8.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망 M으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예비적 청구 관련

원고는 1983. 5. 7.경 원고의 장인인 망 L에게 이 사건 토지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, 망 K이 위 L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여, 1983. 5. 11.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바, 망 L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망 K의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(제1예비적 청구), 망 L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(제2예비적 청구)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 관련

증인 N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. 원고가 1974. 6. 8.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[오히려 원고는 1974. 6. 8.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증인 N의 증언, 을 제3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]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나. 각 예비적 청구 관련

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망 L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,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판사 이학승